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이민석 · 서준오 부위원장님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강동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이종태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‘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현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2호제가목에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시·도조례로 1만3천제곱미터 미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하지만 현행 조례상 영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.

- 이에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취지에 맞게 영 제3조제1항 제2호가목 및 영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시·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면적과 시·도조례로 달리 정하는 기준 면적을 각각 1만3천제곱미터로 확대 규정하고자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